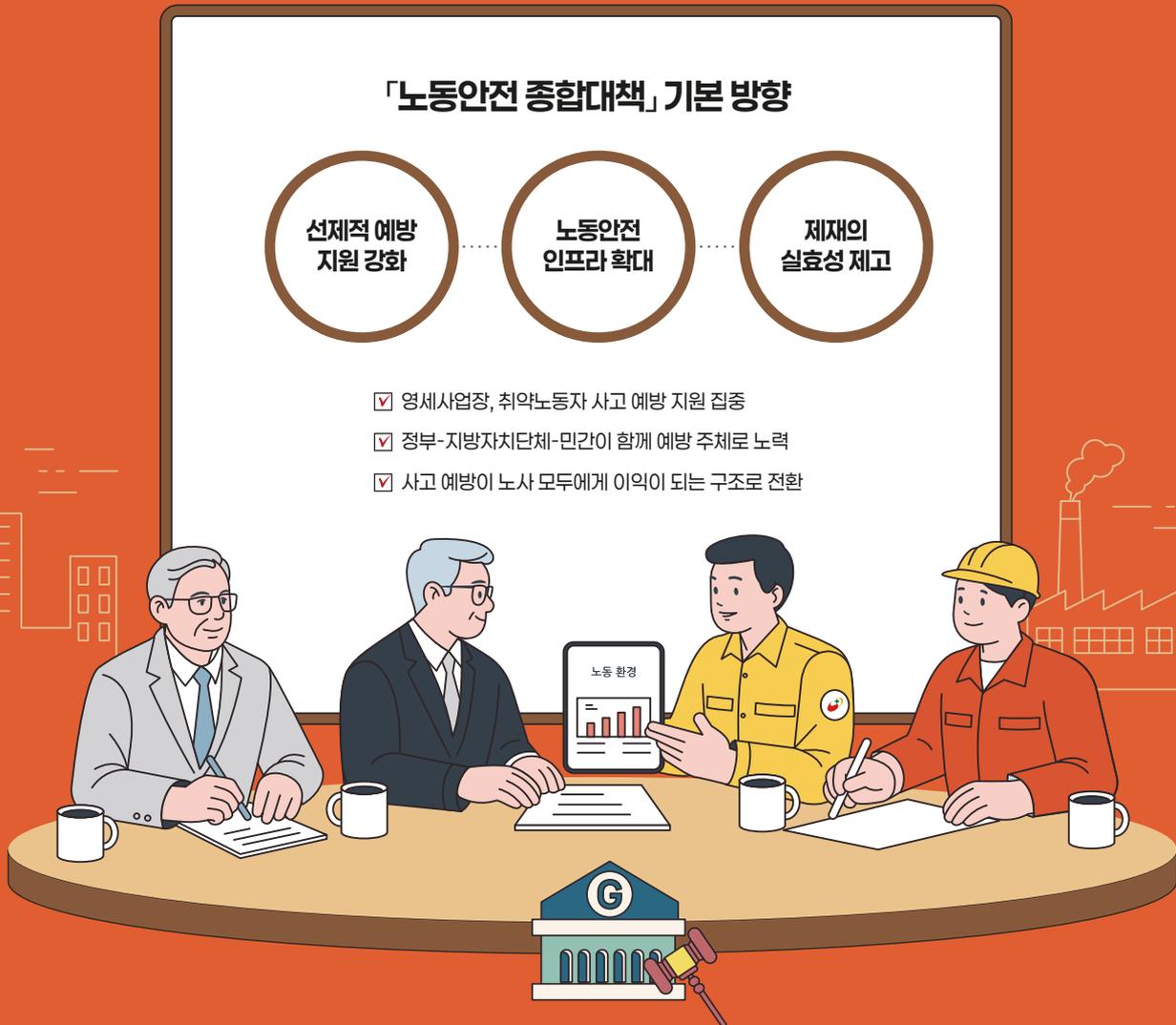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터 새롭게 달라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정리 편집실



정부가 2025년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는 산업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노사정이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 안전정책이다. 이번 대책은 사고사망자 절반 이상이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가 전체의 40%를 넘는 현실을 반영해, 취약사업장과 취약노동자에 정책 자원을 집중 배치하는 것을 핵심 방향으로 삼았다.

영세사업장·취약노동자 집중 보호

정부는 2026년 기준 약 2조 723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50억 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 설비를 대폭 확대한다.

지게차 감지센서, 지붕 안전설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과 시 기반 위험예측 기술도 함께 확대된다.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선제적 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취약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도 강화됐다.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장기근속 외국인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동료 교육을 맡긴다.

배달·퀵서비스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의무화가 강화된다. 고령 노동자를 대상으로는 업종별 안전가이드라인 마련과 작업환경 개선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발주처·원청 책임 강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두 번째 핵심은 ‘누가 안전을 책임지는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고 안전비용을 보장해야 하며, 하도급 과정에서 안전비용을 축소·전가하는 경우 과징금 상향을 통해 제재한다. 폭염 등 기상재해를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하고, 민간 공사 설계서와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반영해 ‘무리한 공기 단축’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도 포함됐다.

공공기관에는 더 강한 책임이 부여된다.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산재예방 배점이 대폭 상향된다.

노동자를 예방의 주체로

노동자의 참여권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해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해 위험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재해조사 보고서 공개, 50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 보건공시제 도입 등 정보공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감독·인프라 대폭 확충

정부는 산업안전 감독·지원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감독 권한이 부여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민간 재해예방기관에 대해서는 역량평가 체계를 고도화해, 저역량 기관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산재 은폐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신고 포상금도 상향한다.

강력한 제재수단 도입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과징금이 부과되며, 건설사는 ‘연간 다수 사망’만으로도 영업정지 대상이 된다.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은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금융권 신용평가·보험료·ESG 평가에도 중대재해 리스크가 반영된다.

정부는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의 관건은 문서가 아니라 실행이다. 산업재해가 ‘운’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